

<별지 서식>

1. 수행기관 신청서 1부.
 - 제안서, 사업신청 제출서류
2. 수행기관 현황 1부.
3.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요약 1부.
4.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5.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6. 실적증명서 1부.
7. 협약서 1부.
8. 착수신고서 1부.
9. 실시상황 보고서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별표>

1. 사업평가기준 및 평가표 1부.
2. 사업수행능력 계량평가기준 1부.
3. 사업변경관련 경미한 사항의 기준 1부. 끝.

<별지 제1호> 수행기관 신청서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수행기관 (주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 문 업 종		
	책임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소재지						
수행기관 1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 문 업 종		
	책임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소재지						
수행기관 2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 문 업 종		
	책임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소재지						
수행기관 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 문 업 종		
	책임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소재지						
위와 같이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관기관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 1. 제안서 2. 사업신청 제출서류 일체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 수행기관이 4개 이상일 경우 해당 내용 작성란을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I. 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컨소시엄 구성 시 이를 포함) [별지 제2호]
2. 경영상태, 조직 및 인원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직 및 인력현황
3. 인력 투입 및 배치	- 사업 수행내용을 고려한 투입 인력 배치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4. 유사사업 이행실적	- 유사사업 이행실적(실적증명서/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II.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 방법	- 본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 컨소시엄 업체 간 상호협력 방안
2. 사업수행 능력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구성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수행기관(공동수급체)의 본 사업과 ZEB 인증취득 가능한 건축물과의 연계 능력
3. 사업수행 일정 및 수행내용	- 일정표 및 일정별 용역수행내용
4. 사후관리, 기타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 기타 사업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장점 등
III. 용역추진전략	* 추진전략은 과업내용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1. 인프라 구축	- BEMS/원격검침기 구축방안 도출 및 에너지관리 최적화 관제점 선정 - 선정된 관제점에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 선정·구축 - 계측기 및 측정 데이터 정합성 검토,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 구축, 데이터 연동
2. 시스템 구축	- 시스템 H/W(서버, 모니터 등) 및 S/W(OS, DB 등) 설치, 인터페이스(타 감시제어 시스템과 연동) - 구축된 BEMS/원격검침기에 대한 결과 테스트 및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 TOC 연계 방안 - 계측 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3. 성과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 데이터 관리 및 활용방안 - TOC 운영 및 관리방안 - 공사 시 화재 등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방안 - 시공시 전문자격 보유자 활용 및 화재보험 등 가입계획

<사업신청 제출서류>

번호	항목	제출확인
1	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7	사업실적증명서	
8	참여인력증빙서류(재직, 경력, 학력, 자격 등 증명서류)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해당시) 국가 R&D 사업과의 연계 개발 제품(EMS)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별지 제2호> 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 수에 따라 추가 작성

업 체 명		대 표 자	
전문분야			
신용평가등급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별지 제3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요약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요약

구분 (전문분야)	성명 (연령)	참여기간 (개월)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명	유사분야 참여실적 (년)
합계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각 부문별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 참여기간은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기간만을 기재함

※ 기술등급은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별첨으로 제출

<참고: 제안서 제출시 삭제>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별지 제4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년)		
본과업 참여임무	부문		자 격 증		
본사업 참여기간	개월		참 여 율	%	
유사용역 이행실적(경력사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5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 고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동 사업과 관련한 것만 기재
- ※ 작성된 주요 사업 실적은 반드시 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
- ※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3년 이내를 의미함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한국에너지공단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7호> 협약서 (실제 협약시 협약서 조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협약 당사자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수행기관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약 내용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2023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수행기관이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시설'이란 공단이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통보한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서' 상 승인받은 내용(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이란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활용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을 말한다.
3. '수행기관(전문기업)'이란 ZEB 인프라 시설 설치·구축 등의 용역을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 제공하는 기업으로, 관련 전문성 및 기술력 등 보유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지원금'이란 공단이 지원대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공단, 수행기관(전문기업)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통보한다.

제4조(시설의 준공) ① 수행기관(전문기업)은 사업 기간 내에 지원대상 시설 준공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협약체결을 위하여 안내한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수행비용의 지급) ① 사업 수행(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수행비용은 공단에서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후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행비용을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기관(전문

기업)에 집행한다.

②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공단에 선급금 교부신청 시, 수행기관(전문기업)은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지원대상 사업 추진 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수행기관(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선급금을 공단에서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등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선급금을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할 시,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의 연간 사업계획에 자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자부담금의 선급금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자부담금은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잔금 지급 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공단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등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수행기관(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전문기업)은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수행기관(전문기업)은 사업을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단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수행기관(전문기업)은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고, 전문공사자격보유자가 공사를 실시토록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수행기관(전문기업)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 또는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약) ① 공단과 수행기관(전문기업)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수행기관(전문기업)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9조(비밀보장)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수행기관(전문기업)은 공단의 승인 없이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할 법원)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공단과 수행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는 정부지원금(선금금) 교부신청 시,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선금금)보증보험증권 및 수행기관(전문기업)이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에게 제공한 이행(선금금)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및 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후 공단에 정부지원금(잔금) 교부신청 시, 준공서류와 함께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수행기관(전문기업)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정부지원금 총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 이상)을 수행기관(전문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① 공단은 필요 시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성과발표회 개최 시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 참여 및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토록 한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인)

수행기관(주관기관)대표 (인)

(수행기관이 여러 기관인 경우 추가)

(비 고)

1. 본 협약서는 공단과 수행기관(전문기업) 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본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 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별지 제8호〉 착수신고서

착수신고서

1. 건 물 명:
2. 설 치 장 소:
3. 공 사 규 모:
4. 시 공 업 체:
5. 착수연월일:
6. 준공예정연월일:

「2023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대상 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인)

수행기관 (인)

- 첨부 1. 수행기관(전문기업) 계약서
2. 설치도면 (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실시상황 보고서

(2023. . .)

1.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

2. 설치 현황

시설설치 진행상황	
사 진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계 획	실 적	잔 액
합 계			

4. 특이사항 :

첨부 1. 공정표

2023 년 월 일

수행기관 대표자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공단은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23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확인

2. 수집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원천징수내역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원천징수내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관 련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별표 제1호> 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 타당성 (10)	• 사업목표의 적합성 •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10
사업계획 (55)	• BEMS/원격검침기 구축 일정 및 품질 관리계획 -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정 및 품질관리 계획의 타당성	15
	• BEMS/원격검침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계획 - 인프라 구축계획의 타당성 - 에너지관리 현황파악 및 효율화 방안의 타당성 - 관제점 선정 및 도입계획의 타당성 -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성 및 기능의 적합성	15
	•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 - 시공 시 전문자격 보유자 활용 -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안의 타당성	15
	• 성과관리 계획 - 데이터 관리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 TOC 운영 관리 계획의 타당성	10
사업효과 (10)	• 에너지 효율화 계획의 타당성 - 고성능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	10
사업수행능력 (15)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신용평가 등급	5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구성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구성 기관별 역할 및 추진 전략의 구체성 - 수행기관(공동수급체)의 본 사업과 ZEB 인증취득 가능한 건축물과의 연계 능력	10
사후관리 (10)	• 유지보수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 기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	10
합 계		100
가점(2)	• 국가 R&D 사업(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과의 연계 개발 제품(EMS)으로 보급 가능한 기업 (실적 확인서류 추가 제출 필요)	2

<별표 제1호> 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평가표

○수행기관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타당성 (10)	• 사업목표의 적합성 •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10	9	8	7	6
사업 계획 (55)	• BEMS/원격검침기 구축 일정 및 품질 관리계획 -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정 및 품질 관리계획의 타당성	15	13	11	9	7
	• BEMS/원격검침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계획 - 인프라 구축계획의 타당성 -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성 및 기능의 적합성 - 관제점 선정 및 도입계획의 타당성 -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성 및 기능의 적합성	15	13	11	9	7
	•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 - 시공 시 전문자격 보유자 활용 -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안의 타당성	15	13	11	9	7
	• 성과관리 계획 - 데이터 관리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 TOC 운영 관리 계획의 타당성	10	9	8	7	6
	• 에너지 효율화 계획의 타당성 - 고성능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	10	9	8	7	6
사업 효과 (10)	• 에너지 효율화 계획의 타당성 - 고성능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	10	9	8	7	6
사업 수행 능력 (15)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신용평가 등급	계량평가기준 참조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구성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수행기관(공동수급체) 구성 기관별 역할 및 추진 전략의 구체성 - 수행기관(공동수급체)의 본 사업과 ZEB 인증취 득 가능한 건축물과의 연계 능력	10	9	8	7	6
사후 관리 (10)	• 유지보수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 기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	10	9	8	7	6
가점(2)	• 국가 R&D 사업(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 등)과의 연계 개발 제품(EMS) 으로 보급 가능한 기업	2				
기타 의견						

<별표 제2호> 사업수행능력 계량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 이상	A2- 이상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	B- 이하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4.4
CCC+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이하	3.5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 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개별 경영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창업기업¹⁾, 사회적 약자기업²⁾ 및 정책지원기업³⁾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을 적용하며, 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1) 창업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2) 사회적 약자기업 : 하기 표에 따름

구분	관련 내용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복지공장 생산 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3) 정책지원기업

구분	관련 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제3호〉 사업변경관련 경미한 사항의 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공통	사업 기간연장	기존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연장되는 기간이 5일이내 일 경우(사유서 제출)
	투입인력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 인력 투입 시
계측 시스템	계측기 위치 변경	동일 부하의 계측기 설치 위치 변경 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측 수량 변경	사업비 변동없이 계측 포인트 증가로 인한 계측기 수량 증가
	계측기 등 H/W 사양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제어 시스템	제품 사양 변경	사업비 변동없이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에너지관리 시스템	제품 사양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 하게 증빙될 경우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필요